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가단133260(본소), 2020가단133277(반소) 판결
[용역비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담당변호사 김운의, 김효경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로

담당변호사 정채광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23.경부터 2019. 3. 11.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3.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C 오피스텔 814세대의 임대보증업무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규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분양홍보관에서 분양계약 시점부터 종료일까지 임대보증증서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② 분양홍보관에서 피고를 대표하여 임대보증 문의 및 기타 민원 사항에 대한 상담업무를 전담한다.

③ 용역의 대가로 1억 원 정을 지급하되 시점은 7,000만 원에 대해선 2017. 12. 30.을 넘길 수 없고 3,000만 원은 실제 임대 개시일로 한다(단, 지급시기는 양자 협의 하에 변동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7. 12. 21.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나머지 용역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가 피고의 기존 법인 인감도장 소지를 기화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부존재한다.

나) ① 피고의 대표자인 원고가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민법 제124조 자기계약금지를 위반하였고, ②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을 위하여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사회 승인이 없어 상법 제398조를 위반하였으며, ③ 원고가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수행하면서 1억 원이라는 거액의 용역비를 받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부존재 여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2017. 12. 27. 피고 회사 돈 7,000만 원을 원고 계좌로 이체하고 개인적으로 임의소비하여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점(의정부지방법검찰청 2019년 형제63397호),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서 작성일자인 2017. 4. 3.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날인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 무효 여부

1) 민법 제124조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124조의 자기계약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다른 한편 자기 자신이 상대방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민법상 대리인의 자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법 제398조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주주는 원고, D, E, F인 사실, 원고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피고 회사의 주식 39%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거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상법 제398조 제4호에 정해진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하여 피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피고의 주주총회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유효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민법 제103조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398조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민법 제103조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수령한 7,000만 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피고에게 위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용역계약이 무효임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태지영